(붙임7.)

재외동포재단초청장학생

학사지침

2014년 2월



① >

한= 출

한-

입^호 장^호

제출

신 9 보 9

숙길

항당

수기

성건

성² 휴학

복회

일 / 일 */*

재우

귀= 연**=**

장

장

주

ठ

깨외동포깨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

제정 2010.12.14. 지침 제15호 개정 2012.2.13. 지침 제21호 개정 2013.1.21. 지침 제40호 개정 2014.1.28. 지침 제50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(이하 "장학생"이라 한다)의 건 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한국어연수과정 이수) ①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일정기간(8개월 이하)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(이하 "이사장"이라 한다)이 특별히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소지자가 각 과정(학사, 석·박사 학위과정)에 입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12.2.13>

- 1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 이상인 자
- 2.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강이 가능 한 자
-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,
- 외국에서 한국어문학,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

②장학생은 어학연수 과정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(이하 "TOPIK") 성적 표를 제출해야하며, 동 시험에서 3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해야 한다.<개정 2013.1.21>

③어학연수 불참자도 반드시 TOPIK 3급 이상의 성적을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. 단, 2년 이 TOPIK 성적표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.<개정 2013.1.21>

제2조(출석 및 결석 허가 신청) ①장학생은 어학연수기간 동안 출석률

95% 이상을 유지해야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장학,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: 사후에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다.< 2012.2.13>

제2조의1(한국어연수과정의 연장) ①당해연도 선발 장학생이 9월학기 은 익년도 3월학기 대학진학 실패시, 익년도 9월학기 진학 희망자에 어학연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단, 익년도 3월부터 8월말까지 장학생 신분 유지 및 어학연수 비를 지원되나, 생활비는 전적으로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연장이 승인된 장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 3급 이상의 급을 취득해야하며, 익년도 9월학기 대학 진학 실패시에는 장학생 자격 상실된다.

※ 한국어연수과정 연장자가 등록금면제대학으로 진학할 경우, 등록금 제자 선정심의시, 후순위로 고려한다.<신설 2014.1.28>

제3조(입학 지원) ①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모든 서류 준비는 학생 본인이 하여야 한다. 재단으로 기제출한 서류는 입학 등의 다른 및 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.

- 1. 대학 입학 관련 정보는 장학생 본인이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, 각 학교별 모집요강 확인 후 입학절차 진행해야한다.
- 2. 장학생 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대학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선택시에는 등록금 면제 해택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또한 공고문에 명시된 대학이라도 지방캠퍼스,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국제학교, 의학, 치의학, 건축학 등 4년을 초과하는 학과는 제외될 수 있으며, 면제인원보다 합격인원이 많은 경우에도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면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.21>
- 3. 재단 장학생의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 등록금 면제 대상을 선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 합격 후 등록금은 먼저 장학생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등록금 면제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은 합격한 대학의 운영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.<개정 2012.2.13>
- 4.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(학생회비, 입학금 등)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.21>

②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후 수학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.<신설 2013.1.21>

제4조(장학금 지급) ①장학금 지급 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지급기간
- 어학연수과정 : 여름학기, 가을학기, 겨울학기
- ※ 어학연수 불참학생 및 어학연수 중도포기자는 생활비 지급 불가, 어학연수생의 일시출국으로 인한 생활비 차감은 제23조④에 의 함.<신설 2012.2.13, 개정 2014.1.28>
- 학부과정 : 입학학기(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) 부터 4년간
- 석사과정 : 입학학기(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) 부터 2년간
- 박사과정 : 입학학기(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) 부터 3년간
- 2. 지급시기 : 매월 5일
- 3. 지급금액 : 월 90만원<개정 2012.2.13>
- 4. 지급방법 : 개인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지급
 - ※ 어학연수과정의 경우, 어학연수 위탁기관에서 지급<신설 2012.2.13>
- ②최초소요경비는 최초 1회 50만원을 지급하며, 첫 생활비 지급과 동시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.<개정 2013.1.21, 개정 2014.1.28>
- ③논문인쇄비(석·박사)는 마지막 학기 1회 5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한 다. <신설 2012.2.13>
- ④장학금의 지급 중지 : 제5조 및 6조에서 정한 개인별 서류의 미제출시 장학금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.<개정 2013.1.21>
- 제5조(제출 서류)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3.1.21>
 - 1. 입학 확정 시 : 입학이 확정된 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합격증 원본 1부<개정 2012.2.13>
 - 2. 매학기 종료 후

가. 성적증명서 원본 1부(7월 20일 이전, 1월 20일 이전)<개정 2012.2.13> 나.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(9월 10일 이전, 3월 10일 이전, 선발년도부터 기 재된 것)<개정 2012.2.13, 2013.1.21> ※일시출국 2 호하 호 제

3. 휴학 후 재

제6조(신입생 준대학 15일전까지 2013.1.21>

- 1. 여권사본 등
- 2. 본인 명의
- 3. 항공권 영수
- ②외국국적 동. 국인 등록을 한
- ③국 연락처

2013.1.21>

※ 공지사항능한 도며gmail 등

제7조(보험 가입

가입을 조치히

②보험가입

문의한다.<신4

제8조(숙소) 장학

하며, 숙소 사

제9조(항공료 지급) ①9

료는 최종 귀국 시 1회 ②항공료 지급은 항공 지급당시의 화율을 적

- 1 거주구 구제고하고 이처고하 가 인바서이 스
- 1. 거주국 국제공항과 인천공항 간 일반석의 실비를 지급하되 지역별 지급상한액은 「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」(붙임 참조)을 기준으로한다. 단, 거주국 이동 및 국 이동항공료는 지급하지 않는다.
- 2. 편도 항공권은 전액(100%) 지급하되 왕복 항공료는 반액(50%) 지급을

원칙으로 한다. ③장학생 확정 선발 #보일 현재 를 지급하지 않는다.<개정 2013.1 ④귀국항공료는 제20조에 의거하 수 서류를 갖추어 재단에 신청한다. <개정 2012.2.1 1. 귀국신청서 1부<신설 2013.1.1 2. 졸업증명서 1부<신설 2013.1. 3. 논문(석·박사 및 학사 해당자 4. 귀국항공권 및 항공권 영수증 .1.21> ⑤불합격자 및 중도탈락자도 다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. F단귀국·취업 등의 사유 단, 자격상실 후 6개월 이 신경 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7 <신설 2013.1.21> 1. 귀국신청서 1부<신설 2013.1. 2. 장학생자격상실확인서 1부<신 3. 귀국항공권과 항공권 영수증 설 2013.1.21> 2월 또는 8월에 일괄지급한다. ⑥졸업자의 귀국항공료는 졸업

귀국항공료를 미리 받아야할 경우

제10조(등록) 장학생은 입학허가를 받은 수학대학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에는 출국 30일전까지 재단으로 손보해야 한다.<산설 2014.1.28>

제11조(수강) 장학생은 등록한 수학대학에서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성적 보고) 장학생은 매학기 종료 후 제5조에서 정한 기간 에 성적증명서 1부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2.2.13, 2013.1.21>

제13조(성적 관리) 각 학기별 학업성적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한 조건<신 설 2012.2.13>

①<삭제 2014.2.12>

단, 귀국 전 장학금 계좌 해지 부

②경고 :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과정은 85%미만(최초 1년 80%미만), 대학원 과정은 90%미 만인 경우
 영군을 하다로 하고 2회가

 최초 2회가

 평가에 합산

 경우 합산하여

 산 대학의 장

 다.<개정</th>

제14조(휴약 은 원칙적으로 허를 구 등을 가 가 다 학 전세시번, 외교단절 정부의 일시소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하고자 : 학 2개월 전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: 2013.1.21>

- 1. 휴학 4부<개정 2013.1.21>
- 2. 진단 본 1부(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)<개정 2013.1.21>
- 3. 입영조지서 1부(입대휴학의 경우에 한함)<신설 2013.1.21>
- 4. 지도교수의견서 1부(필요시)<개정 2013.1.21>
- ②재단의 승인 후 수학기관의 <u>하취에 따라 휴학선고를</u> 해야 한다.<개정 2013.1.21>

③사전 승인 없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.<개정 2013.1.21> ④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천재지변, 질병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21>

제15조<삭제 2013.1.21>

제16조(복학 및 신고)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복학 신청 후 장학생은 복학 처리 결과를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복학 후 재학증명서 1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2.13> ③복학 후 장학금 지급 개시는 3월, 9월로 정한다.<개정 2012.2.13>

제17조(일시출국 신고) ① 학기 중 해당 장학생은 한국에 체류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(부모사망, 질병 등)가 있는 경우에는, '일시출국신청

서'를 작성하여 재단의 허락을 받아 출국한다 <개정 2012.2.13, 2013.1.21> ②장학생은 일시출국 10일전에 재단에 일시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제출기한 미준수시 해당 월 장학금은 지급 하지 않는다 (단, 부모사망, 급성질병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일시출국은 예외)<개정 2012.2.13, 2013.1.21>

- 제18조(일시출국기간) ①일시출국기간은 1회 60일,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전공 관련 학술대회 참가 등 수학대학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3.1.21, 개정 2014.1.28>
- ②일시출국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제23조에 의한다<개정 2012.2.13, 2013.1.21>
- ③한국어연수과정 기간 장학생은 일시출국을 불허한다. 다만, 방학기간 중에는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 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. 단, 개인질병치료, 부모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 및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 로일시출국 할 수 있다.
- 제19조(재입국 신고) 일시출국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 에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를 갖추어 재단에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2.13>
 - ※ 출입국사실증명서 미제출시 해당 월 생활비 지급을 유예한다.<신설 2014.1.28>
- 제20조(귀국 신고) ①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전까지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.21>
 - 1. 귀국 신청서 1부
 - 2. 지도교수 의견서 1부(장학기간 종료 해당자는 불필요)
- ②학위과정자가 장학기간 이 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에 체류할 경우, 학사는 6개월, 석사는 12개월, 박사는 18개월까지 귀국신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, 장학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마다 귀국연기신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.21>

- ③귀국신고자에게 이사장은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귀국항공료가 지원되지 아니한다.<신설 2013.1.21>
- 1. 취업, 결혼 등 학위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<신설 2013.1.21>
- 2. 무단귀국, 취업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<신설 2013.1.21>
- 3. 귀국연기신고서 미제출자<신설 2013.1.21>
- **제21조(연락처 변경 신고)** 주소지 또는 연락처나 여권, 학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, 변경사실을 7일 이 재단에 알려야 한다.<개정 2012.2.13> ※ <삭제 2013.1.21>
- 제22조(장학기간)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한국어연수과정(입학전 8개월) 외에 학부과정은 4년, 석사과정은 2년,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12.2.13> ②제1항의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다.
- 제23조(생활비 지급 일시 중단) ①일시출국일수가 학기당 30일을 초과한 경우,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으로 출국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생활비를 산정하여 지급한다.(예 : 40일 출국시 30일 생활비 차감 감면으로 10일 생활비만 차감, 900,000원/30일 ×10일=300,000원 차감).<개정 2012.2.13, 2013.1.21, 2014.1.28>
- ②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제5조에 명시된 기한 에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초과지급한 생활비는 장학생이 반납하거나 지급 재개시 차감한다.<신설 2013.1.21>
- ③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3.1.21>
- ④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한국어연수기간(방학기간 포함) 중 일 시출국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연수에 불참한 기간만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3.1.21>
- 제24조(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)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은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.
 - 1. 장학생 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 났을 때

- 2.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때
- 3.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4. 재단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때
- 5. 학기 중 무단 일시 출국하거나 한국어연수기관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한 자 또는 방학 중 무단 일시 출국이나 한국어연수기관 방학 기간 중 무단 일시 출국을 포함하여 우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<개정 2012.2.13>
- 6. 학위과정 또는 연결과정 재학 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
- **25_ 씨용도**위 총 학점의 2/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
- 7.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 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
- 8. 휴학과 관련한 상기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<개정 2012.2.13>
- **2**○.입학전형 불합격자, 학업 포기자(미등록자 또는 중도포기자)
- 10. <삭제 2014.1.28>
- 11.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는 85%미만으로(최초 1년 80%미만), 석·박사는 90%미만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<개정 2014.2.12>
- 12.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퇴학 처분을 받은 자<개정 2014 1.28>
- 13. 국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
- 14. 취업을 하는 자<개정 2012.2.13>
- 15. 어학연수과정 수료 전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표 미제출자 또 는 제출한 성적이 3급 이하인 자
- 16. 등록금면제 협조 대학의 등록금 면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<신설 2013.1.21>
- ② 1항의 장학생에 대한 "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"은 제27조(중요사항의 결정)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<개정 2012.2.13, 개정 2014.1.28>
- **제25조(경고)**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경고 처분한다.
 - 1. 한국어연수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출석률 95% 미만인 경우<개정 2012.2.13>
 - 2. 방학 중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출국 하거나, 허가기간

- ★보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<개정 2012.2.1</p>
- 3.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 정은 85%미만인 **20日(段 2** 1년 80%미만), 대학 경우
- 4.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 받은 경우, 재단 신고공라경화[발화] 찬찬하병차출해 野걘 양 생각열시쾡현화 엑 었음;청 큐 전 분호조 난학 할 편단 하지 않음<신설 2014.1.28>
 - **제26季(주의)**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주의 처분한다.<신설 2012.2,13.
- 년재단**업 [좌두발환점 선생자**) 팽채홍환문기해**광태학화 환속** 뱀분율**호고현광 채등학원**건 전관에병 과정은 85%미만(최초 2학기 80%미만), 대학원 과정은 90%개만인 경우
 - 2. 제출서류(제 5조)를 사전 연락년없이 정해진

수료생 금득받년신선간어빙치출규문가 규에상득이 월허월허년과의



으로 불참시 불참사유서 및 관련 증빙시 ②특히 역사문화체험의 경우, 1회 불참 벌점 2점, 총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일 기 ③단, 지역별 장학생 네트워크 활동, 연 봉사요원, OKFriends 자원봉사단 등 지 한다.<신설 2014.1.28>

부칙<제15호, 2

1.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1호,

- 1. 이 지침은 '12.02.13부터 시행한다.
- 2. 다만, '09년도 이후 선발되어 시행일 제13조 성적 관리 규정을 소급하여 적

부칙<제40호, 2013.1.21>

- 1. 이 지침은 '13.01.21부터 시행한다.
- 2. 다만, 제23조 생활비 지급 규정은 2013.03.01부터 적

부칙<제50호, 2014.1.28>

- 1. 이 지침은 2014.02.01부터 시행한다.
- 2. 다만, 제23조 생활비 지급 규정은 2014.03.01부터 적

깨외동포깨단 장학사업 담당까 연락처

-, 개단 8 단시 3월전 미리 연락할 것

보험사(CHARTIS) 문의

○ 나승옥 팀장, 010-3162-3454, seuok@korea.com

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일시출국신고서

이름			생년월일				
국가명			선발년도				
소속(학교/학	나 과)						
연락처(핸드	.폰)						
	1. 일시출국 사유						
2. 출국기간, 여정							
					T		
출국기간	성 명		관	계			
긴급	전화번호						
연락처	주 소						

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명시된 기간 동안 출국하고자 하며, 출국기간 동안 본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(사건, 사고 등)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명합니다.

				2014.	•	
제출자	성명	(Name)	:			
제출자	서명(Sig	nature)	:			

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

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휴학신청서

이름		생	년월일		
국가명		선	발년도		
소속(학교 <i>/</i> 학	라 과)		·		
연락처(핸드	본)				
	 1. 휴학사유(구체적으로 기술)				
2. 휴학기간(복학시점 반드시 명기)					
거주국 긴급 연락처	성 명		관 계		
	주 소				
	전화번호				

신청자 성명 (Name) : 신청자 서명(Signature) :					2014.	•
시청자 서명(Signatura) ·	신청자	성명	(Name)	:		
	신청자	서명(Sio	nature)			

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

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복학신청서

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 소속(학교/학과) 연락처(핸드폰) 1. 복학사유

2. 휴학기간(복학시점 반드시 명기)

상기명 본인은 ____ 년도 __학기 복학을 신청하는 바입니다. 거주국
긴급 주소
연락처

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귀국연기신고서

			1
이름		생년월일	
국가명		선발년도	
소속(학교 <i> </i> 학과)			
연락처(핸드폰)			
주소			
	사유서		

신청자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귀국일을 6개월 연장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	2014.	•	
제출자 성명	(Name) :			

제출자 서명(Signature) : _____

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

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귀국신

이름			생년	견월일			,
국가명			선병	발년도			
귀국사유	□ 학위 취	득 🗌 불	L 합격	□ 중5	三王		
수학과정	□ 어학연수 □ 석사		}사 }사	□ 석별	낚 사	#-합	
수학학교 <i>[</i> 전공							
졸업논문명 (졸업년도)							
귀국예정일		귀국경 (항공요					
	이메일	•	,				
귀국 후 연락처	전화번호						
6971	주 소						
1. 수학 소감							
※ 소감은 코리안넷 장학생클럽(http://scholarship.korean.net)에 개제할 예정 입니다.							
2.	수학 중 활동	F사항(논	문발3	E, 특이시	·항	둥)	

3. 귀국 후 활동계획
4. 건의 사항 및 의견